

##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정 익 중<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최 선 영

(이화여자대학교)

정 수 정

(이화여자대학교)

박 나 래

(이화여자대학교)

김 유 리

(이화여자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추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망, 판결문, 양형

<sup>+</sup> 주저자, 교신저자

## 1. 서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호와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하고 그 후유증이 장기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아동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사상 및 가부장제의 전통으로 인하여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녀에 대한 체벌을 자연스러운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부재하여 왔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형사처벌 등 국가의 공적 개입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오정수·정익중, 2013).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 중상해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사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된다(동아일보, 2014; 연합뉴스, 2014).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 및 보호자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의 강화보다는 아동복지의 목적을 고려하여 원가정 및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하여 그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구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형법상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상해나 폭행, 학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중형이 선고되나, 가족 간의 살해라도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 또는 각종 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으며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고 있다. 가족살해(살인의 경우)의 양형에 대해 분석한 손지선·이수정(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의 양형 평균은 160.50개월(≒13.4년)인 반면, 비속살해는 122.44개월(≒10.2년)로 실제로 존속살해에 비하여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존속대상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배경에는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관념이 자리하는 반면, 부모에 의한 아동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가중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며 부모의 폭력을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보는 전근대적 인식이 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헤럴드경제, 2016).

2014년 특례법 제정 전까지 아동학대범죄는 형법상 학대죄, 상해죄, 살인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

한 처벌이 실제로 매우 온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세원(2015a)의 연구는 사망사건 등 중한 범죄를 제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고소, 고발된 수는 10% 미만이며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3년 동안 형이 확정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집행유예율이 46.2%로 전체 1심 형사사건 집행유예율인 21%(법원행정처, 2013: 864-874)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시 형량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하'가 선고되는 비율이 전체의 86%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주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아동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 역시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주가해자인 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으나, 학대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친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뉴시스, 2016; 로이슈, 2015). 최근 미취학 아동을 집안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경우, 학대를 방관한 친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문화일보, 2016).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관한 자도 아동의 사망에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양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이며 사회적 분쟁과 법질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양형의 합리적인 타당성이 구축되어야 한다(이혜숙,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양형은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양육자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아동의 인권 및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판결문에 제시된 양형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가해자를 주가해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방조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판결문에 관행적으로 등장하는 양형요소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 1) 본 연구에서 방조자는 일상적인 언어사용을 고려한 표현으로, 법적으로 피해아동의 살인 또는 치사에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살인 또는 치사에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주가해행위자의 학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 방임으로 평가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을 널리 포함하였다. 실제 방조자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살인방조, 상해치사방조로 처벌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되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제1심에서는 상해치사방조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는 상해치사방조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최근 원영이 사건과 같이 친권자인 친부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방조자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본범으로 처벌할지, 방조범으로 처벌할지의 문제는 방조자가 주가해행위자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을 주가해행위자의 학대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서 본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을 제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소수의 사례만을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이슈화된 단일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을 전수에 가깝게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양형요소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판례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읽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 2. 문헌고찰

### 1)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특징

미국의 아동학대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US DHHS, 2016), 1965~1999년까지 스웨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129건에서도, 가해자가 친부 52.7%(계부 7.4%포함), 친모 45%(계모 1.7%포함), 부모 모두 가해한 경우가 2.3%로 보고되는 등(Nordlund and Temrin, 2007), 아동학대 사망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경우, 학대를 경험한 비 사망 아동에 비해 생물학적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더 높았다(Douglas and Mohn, 2014).

아동학대 가해자의 성별은 주요위험 요인 중 하나로(McManus et al., 2015; Overpeck et al., 1998), 아버지 또는 계부 등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nett et al., 2006; Putkonen et al., 2010, Cavanagh et al. 2007). 아버지는 주로 두부외상(Abusive Head Trauma: AHT) 및 신체적 학대의 형태로, 어머니는 방임의 형태로 학대를 가하고 있다(Klevens and Leeb, 2010). 또한 아버지에 의한 아동 사망사건은 주로 높은 연령의 아동에게서, 어머니의 경우는 어린 연령의 영유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후우울증이라는 어머니의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Bourget and Gagné, 2002; Friedman et al., 2005).

Douglas와 Mohn(2014)의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 학대(fatal child abuse)를 받은 아동은 비치명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학대를 받았고, 재정과 주거의 불안정함을 더 경험하였으며, 사망아동의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사회서비스를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김세원 외(2014), 김지혜 외(2013) 등의 연구가 있다. 김세원 외(2014)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80.0%로 대부분이며, 국외 자료와 달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 유형이 신체학대인 경우, 1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외(2013)의 연구에서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주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 순서로 나타났고, 아동살해의 주된 이유로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 살해, 양육능력의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 2)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통계 및 사법처리 현황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4년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은 126명이며,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14명으로 전체 학대 피해 아동 7,402명 중 약 0.2%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그러나 이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에 한하여 집계된 수치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간에 직접 신고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상당수 과소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지혜 외, 2013).

아동학대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양형자료 수집, 분석에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판결문에 적절한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학대사건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형관·김현숙, 2015). 따라서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사법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부 연구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에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건 249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23건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하여는 실행비율 및 선고형량이 높은 편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2건(8.7%)이며 실행을 선고받은 21건의 사건 중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8건(38.1%)을 차지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내외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에 관한 법령 및 양형기준

미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연방법으로 1974년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은 일반적인 폭력범죄 등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에 가중요소로 피해자가 아동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범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미국의 주법을 살펴보면, 미네소타주는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극도의 인명경시 태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급 살인으로 무기형에 처하고 있으며(Minn. Stat. §609.185 (a)(5))<sup>2)</sup>, 메릴랜드주는 보호, 후견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을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악의적으로 취급하여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여 사망 혹은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급 학대로서, 사망의 경우 40년 이하의 징역을, 중상해의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Md. Code Ann., Crim. Law § 3-601)<sup>3)</sup>.

2) <https://www.revisor.mn.gov/statutes/?id=609.185>

영국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Victoria Climbié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을 제정하여 지역 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아동사망검토자문단(Child Death Overview Panels, CDOPs)을 두어 각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아동사망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법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은 아동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방치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이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sup>4)</sup>. 영국의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sup>5)</sup>에 따르면 중대한 고의적 신체의 손상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최고 종신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신체적 손상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최고 5년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경우, 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근거법률인 아동복지법 등에 이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상 각종 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되어 왔다.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특례법상에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율한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제259조), 학대치사(형법 제275조, 제273조), 유기치사(형법 제275조, 제271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살인죄가 아닌 각종 치사죄로 의율되어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sup>6)</sup> 그러나 특례법 신설로 인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이 상향됨으로써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부터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범죄의 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

3) [http://mgaleg.maryland.gov/2016rs/statute\\_\\_google/gcr/3-601.pdf](http://mgaleg.maryland.gov/2016rs/statute__google/gcr/3-601.pdf)

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28/section/5>

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pdfs/ukpga\\_20040031\\_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pdfs/ukpga_20040031_en.pdf)

6)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실시하도록 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치사죄와 중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형량범위는 기본 영역이 4년~7년으로 기본형에서 감경이 될 경우 2년 6월~5년, 가중이 될 경우 6년~9년까지 선고가능하다.

그러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임에도 양형기준에 의하면 치사의 경우 권고형량범위가 최고 9년으로 제시되어 있어, 특례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둔 제정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표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sup>7)</sup>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요소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요소	행위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4) 아동학대범죄의 판결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범죄의 판결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경은(2015), 박양호(2015), 이세원(2015a, 2015b)의 연구 등이 있다. 이경은(2015)은 2000~2014년까지의 가정 내 아동학대사건 판례 16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범 여부, 연령, 임신, 경제활동 등 피고인의 상황이 가장 많은 판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성, 피고인의

7) 대법원 양형위원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8/arrest\\_01.jsp](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8/arrest_01.jsp)) 참조.

반성정도와 피해아동에게 학대가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보호방법 등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판례에서는 피학대아동보다는 피고인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세원(2015a)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에 대한 분석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양호(2015), 이세원(2015b)의 연구는 '울산계모사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살인죄 적용여부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양호(2015)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울산계모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아동이 성인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신체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영국의 'Daniel Pelka' 사건, 독일의 'Karolina' 사건, 미국의 'Eli Johnson'사건, 'Edna Hunt' 사건, 'Lily' 사건 등 해외의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흉기의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세원(2015b)의 연구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피학대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실형 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1/5를 넘는 등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계모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을 재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55건의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문 95건이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벌받은 피고인은 총 81명으로, 이 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죄명으로 처벌된 추가해행위자는 69명이며 아동학대나 사망에 관여한 방조자는 12명이다.

특례법 제정 이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 상의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추가해행위자의 죄명은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학대치사, 유기치사, 과실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다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총 102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문 158건을 수집하였으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보고된 2001-201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가 126명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였다. 다만, 죄명이 영아살해 또는 영아유기치사인 사건으로서 분만 직후의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사망의 정의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는 달리 반복적 학대가 나타나지 않고 10대 임신,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 원치 않는 임신 등의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47건의 영아사망사례(판결문 63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5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문 95건을 분석하였다.

## 2) 분석방법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양형 실태를 파악하고 양형의 적정성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추가해행위자의 평균선고형량, 법정형과 선고형의 분포 차이,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 개별양형요소에 따른 실행비율과 선고형량 등을 살펴보았으며, 판결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판결문에 관행적으로 등장하는 양형요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학대 및 사망에 관여한 방조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판결문 텍스트의 유목별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판결문은 판사의 최종 판결의 논리적 과정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관련 법조문 해석과 사회문화적 감정, 그리고 판사의 개인적인 논리와 경험이 반영되는 복합적 사고의 결정체이며, 판결문 분석은 사건의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념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미량, 2013). 또한 사회과학의 연구도구 중 하나인 내용분석은 기록물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며, 텍스트에서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타당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Anderson et al., 2001; Riffe et al., 2014) 판결문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해 얻어진 분석유목은 예비코딩 후 법조인의 자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주로 언급되는 양형요소와 관련하여 판례에 담긴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을 읽어내고 판사들의 인식 변화 및 이들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주가해행위자의 양형에 대한 빈도분석

#### (1) 주가해행위자 및 피해자 특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주가해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주가해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친부모가 52.2%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계부모(동거인 포함) 20.3%, 양부모 또는 위탁부모 7.2%, 친인척 5.8%, 시설종사자 7.2%, 기타(이웃, 지인) 7.2%로, 친부모, 계부모(동거인 포함), 양부모 등 아동과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사망 연령을 살펴보면 5세 이하의 영유아의 비율이 6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기보호능력이 미숙한 어린 영유아일수록 치명적 학대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주가해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친부모	36	52.2
	계부모(동거인 포함)	14	20.3
	위탁/입양부모	5	7.2
	친인척	4	5.8
	시설종사자	5	7.2
	기타(이웃, 지인)	5	7.2
	계	69	100.0
피해아동의 연령	0세	9	16.4
	1-2세	12	21.8
	3-5세	12	21.8
	6-8세	11	20.0
	9-12세	7	12.7
	13세 이상	4	7.3
	계	55	100.0

**(2) 죄명 및 선고형량**

아동학대 사망사건 주가해행위자 69명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학대 아동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죄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7.4%로 전체 피고인의 1/5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고인이 상해치사(26.1%), 폭행치사(18.8%), 학대치사(14.5%), 유기치사(10.1%) 등 형법상 각종 치사죄에 의하여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은 18.8%로 약 80%의 피고인만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이었으며, 징역 10년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로 낮은 편이었다.

살인죄 및 각종 치사죄의 법정형 하한 및 피학대아동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죄명 및 선고형량

구분		빈도(명)	비율(%)
죄명	살인	12	17.4
	폭행치사	13	18.8
	상해치사	18	26.1
	학대치사	10	14.5
	유기치사	7	10.1
	아동복지법위반	2	2.9
	과실치사	4	5.8
	업무상과실치사	3	4.3
	계	69	100.0
선고형량	1년 미만	0	0.0
	1년-3년 미만	12	17.4
	3년-5년 미만	9	13.0
	5년-10년 미만	26	37.7
	10년-20년 미만	7	10.1
	20년 이상	1	1.4
	집행유예	13	18.8
	벌금형	1	1.4
	계	69	100.0

**(3) 법정형에 따른 비교**

분석대상 판결문 중에서 법정형에 하한이 명시되어 있는 범죄(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학대치사, 유기치사 사건)로 처벌된 경우, 각각의 선고형량 및 법정형과 선고형의 분포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

았다.

분석 결과, 살인죄(9.7년)와 상해치사(5.6년)는 법정형 하한의 약 2배에 달하는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행치사(3.2년), 학대치사(4.2년), 유기치사(2.6년)는 법정형 하한과 유사한 정도로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형 하한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집행유예 포함)는 총 17건으로서 전체사건대비 약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치사(38.5%), 학대치사(44.4%), 유기치사(42.9%)의 경우 살인(18.2%)이나 상해치사(16.7%)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한 판결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작량감경이 적용된 사건은 13건으로 전체의 약 18.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분석 결과 대상사건 중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사건은 대부분 작량감경(형법 제53조)<sup>8)</sup>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사례가 대부분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어 선고하기 위하여 작량감경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노명선·강동우, 2010)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문 상에 작량감경을 하는 기준이나 이유가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작량감경의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사건은 13건 중에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건에서는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아래의 양형 사유에서 참작함’ 등으로만 기술되고 있었다.

<표 4> 법정형에 따른 비교

(단위: 명)

죄명 (법정형)	N	선고 형량 (실형)	선고형 종류		선고형 분포			작량감경 건수
			실형	집행 유예	법정형 하한미만	법정형 하한	법정형 하한초과	
살인(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	12	9.7년	11 (91.7%)	1 (8.3%)	2 (16.7%)	2 (16.7%)	8 (66.7%)	1 (8.3%)
상해치사 (징역 3년 이상)	18	5.6년	18 (100.0%)	0 (0.0%)	3 (16.7%)	0 (0.0%)	15 (83.3%)	3 (16.7%)
폭행치사 (징역 3년 이상)	13	3.2년	10 (76.9%)	3 (23.1%)	6 (46.2%)	0 (0.0%)	7 (53.8%)	3 (23.1%)
학대치사 (징역 3년 이상)	10	4.2년	9 (90.0%)	1 (10.0%)	4 (40.0%)	1 (10.0%)	5 (50.0%)	4 (40.0%)
유기치사 (징역 3년 이상)	7	2.6년	6 (85.7%)	1 (14.3%)	3 (42.9%)	1 (14.3%)	3 (42.9%)	2 (28.6%)
총계	60	5.3년	54 (90.0%)	6 (10.0%)	18 (30%)	4 (6.7%)	38 (63.3%)	13 (21.7%)

비록 작량감경 규정의 입법취지 자체가 범죄의 내용과 정상에 비추어볼 때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

8) 작량감경이란 법률의 가중, 감경을 하고 난 후 법관이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작량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치게 가혹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보다 더 낮게 선고하여 적정한 선고형을 형성하기 위함에 있다고는 하나, 뚜렷한 이유 없는 작량감경 규정의 남용 또는 관행적 사용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4)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

분석대상 판결문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 상해치사, 살인, 폭행치사, 학대치사 등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수는 17명으로 전체 피고인의 24.6%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이 명시된 20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표 5〉 참조).

〈표 5〉 양형기준의 준수 여부<sup>9)</sup>

피고인	판결	죄명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선고형	비고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2고합188	상해치사	징역 4~7년	징역 5년	
	대전고법 2012노376	상해치사	징역 4~7년	징역 4년	
2	전주지법 2012고합97	상해치사	징역 9년~19년 6월	징역 8년	하한이탈
3	광주고법 2015노308	상해치사	징역 4년~7년	징역 5년	
4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3고합15	상해치사	징역 7년 이상	징역 10년	
5	광주지법 2014고합35	상해치사	징역 4년~7년	징역 5년	
6	울산지법 2013고합309	상해치사	징역 4~13년	징역 15년	상한이탈
	부산고법 20014노264	살인	징역 10~18년 6월	징역 18년	
7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4고합38	살인	징역 15년 이상	징역 15년	
	광주고법(전주) 2014노108	살인	징역 15년 이상	징역 12년	하한이탈
8	광주고법(전주) 2014노108	살인	징역 15년 이상	징역 5년	하한이탈
9	대구지법 2014고합 202	살인	징역 5년 이상	징역 15년	
10	울산지법 2014고합356	살인	징역 10년 이상	징역 20년	
11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2고합131	폭행치사	징역 3년~7년 6월	징역 5년	
12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2고합129	폭행치사	징역 3년 이상	징역 2년	하한이탈
13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2고합129	폭행치사	징역 3년 이상	징역 2년	하한이탈
14	창원지법 2012고합568	폭행치사	징역 3년 이상	징역 7년	
15	창원지법 2012고합568	폭행치사	징역 3년 이상	징역 5년	
16	광주지법 2013고합53	폭행치사	징역 3~5년	징역 2년	하한이탈
17	서울서부지법 2014고합199	학대치사	징역 2년 6월~5년	징역 2년 6월	

9) 광주고법(전주) 2014노108 판결(피고인 7, 8),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2고합129 판결(피고인 12, 13), 창원지법 2012고합568 판결(피고인 14, 15)의 경우 추가해행위자가 2명이 하나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분석 결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상향 또는 하향 이탈한 판결은 총 7건(35.0%)으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65%에 불과하였다. 이 중 상향이탈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6건은 모두 하향이탈로 나타나,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판결의 대부분이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는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및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 경향이 양형기준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3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선고된 전체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9.6%였고, 그 중에서도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9.8%,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6.1%였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4). 이와 비교할 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5) 양형요소

전통적인 양형이유 기재 방식은 범죄사실과 정상관계사실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추출한 뒤 두 가지를 비교형량하여 한 쪽에 무게를 두고, 다른 쪽을 참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형표, 2015).

다음의 <표 6>은 추가해행위자의 판결문에 제시된 양형요소를 감경, 가중요소 및 행위, 행위자, 피해자,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별양형요소에 따른 실행비율 및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판결문상에 언급된 개별 양형요소가 실제 양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양형요소에 따른 실행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44.4%),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57.1%)의 실행비율이 약 50%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그 외에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공탁'(70.6%), '생활환경, 경제형편'(71.4%), '피고인의 어린 연령'(75.0%)의 실행비율이 약 70% 정도로 다른 양형요소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선고형량의 경우, '아동을 성실히 양육해 온 점'(3.4년),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3.9년), '건강, 우울증, 스트레스'(4.1년), '임신, 다른 가족(자녀)에 대한 부양책임'(4.2년),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공탁'(4.9년)을 언급한 판결이 선고형량 5년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실행비율이나 선고형량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공탁' 또한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충격'(실행비율 100.0%, 선고형량 10.8년), '지속적 학대'(실행비율 100.0%, 선고형량 7.0년), '학대의 잔인성'(실행비율 100.0%, 선고형량 7.5년),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필요성'(실행비율 100.0%, 선고형량 7.6년)이 언급된 판결의 경우 실행비율 및 선고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범행의 심각성이나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양형요소가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등의 법집행담당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가해차 처벌, 피학대 아동의 보호 및 치료 등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다(노충래 외, 2012). 본 연구에서 판사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련된 양형요소가 실제로 실행비율 및 형량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피학대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 등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표 6〉 양형요소 분석<sup>10)</sup>

양형요소		N(%)	실행비율 (%)	선고형량 (년)	
감경요소	행위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	7(10.1)	57.1	6.1
		우발적 범행	7(10.1)	85.7	5.4
	행위자	피고인의 어린 연령	8(11.6)	75.0	6.8
		초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43(62.3)	88.4	6.1
		자기반성, 자수	43(62.3)	86.0	5.8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19(27.5)	84.2	3.9
		임신, 다른 가족(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10(14.5)	70.0	4.2
		아동을 성실히 양육해 온 점	9(13.0)	44.4	3.4
		불우한 성장과정, 교육 정도	7(10.1)	85.7	5.3
		건강, 우울증, 스트레스	12(17.4)	83.3	4.1
생활환경, 경제형편	14(20.3)	71.4	6.4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공탁	17(24.6)	70.6	4.9	
가중요소	행위	지속적 학대, 상습, 반복성	27(39.1)	100.0	7.0
		죄질 불량, 비난가능성, 반인륜성	36(52.2)	91.7	5.6
		학대의 잔인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23(33.3)	100.0	7.5
		범행 후 정황(치료 없이 방치, 은폐 등)	15(21.7)	80.0	6.2
	행위자	보호자의 양육책임 방기	31(44.9)	96.8	6.4
		반성 없음, 범행 부인, 책임 전가	14(20.3)	100.0	7.6
	피해자	합의 없음, 유족의 엄벌 요구	11(15.9)	81.8	6.7
		피해자의 어린 연령, 저항능력 없음, 아동이 겪었을 고통	38(55.1)	92.1	6.9
	아동학대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필요성	10(14.5)	100.0	7.6
사회적 충격(유명사건이나 언론보도 등)		7(10.1)	100.0	10.8	

10) 양형요소의 빈도와 개별양형요소에 따른 실행비율 및 선고형량은 1심과 항소심을 구분하지 않고 확정판결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2) 주가해행위자의 양형에 대한 내용분석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주로 언급되거나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의 4가지 주제로 범주화하고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판결문에 나타난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을 읽어내고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과 연관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1) 초범, 우발적 범행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형사적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행위자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살해 가해자의 실행진과횡수는 일반살해에 비해 월등히 적어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손지선·이수정, 2007), 가족 내 폭력은 일반범죄자(street criminals)의 폭력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된다(Megargee, 1982).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 분석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 학대가 언급된 사례가 전체의 39.1%를 차지하였음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이 언급된 사례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반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암수(dark number)였을 뿐인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요소를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쉽사리 고려하는 관행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사례 1>의 친모인 피고인은 평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오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되었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5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 (중략)...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 (중략) ...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중략) ...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사례 1>,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3 판결)

한편 <사례 1>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반복적 학대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사망 당시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례 2>는 피해자를 담벼락에 집어던지고 이불로 입을 막아 살해하려다 중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작량감경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본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이 낳은 친자를 살해하게 된 점”(<사례 2> 춘천지방법원 2004고합90 판결)을 감경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사례 3>과 같이 일부 판결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6년이라는 비교적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처의 소생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저지른 학대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으로서 그 행위의 방법이나 결과 등의 측면에서도 전혀 선해질 여지가 없고, 그런 만행이 급기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사례 3〉,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117 판결)

## (2) 친권자 및 양육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 계부모(동거인) 또는 양부모로서 아동의 친권자이거나 실질적 양육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 분석에서도 아동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라는 점을 가중사유로 언급한 사례는 4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감형사유로서 아동(친자식)을 잃은 심적 고통을 언급한 사례는 27.5%, 아동을 성실히 양육해온 점이 언급된 사례는 13.0%를 차지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에서 친권자 또는 양육자라는 양형요소는 판결에 따라 가중요소 또는 감경요소로서 상반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던 낡은 사고로부터 벗어나 점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모순적인 태도는 <사례 4>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친모인 피고인은 자녀를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작량감경되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나무 몽둥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손목과 발목을 묶는 등 감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12세)의 피부가 괴사하는 등 보기에 참담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고, 피해자(8세)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중략)... 다만,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자식이 사망하였다는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사례 4〉, 대전지법 2005고합150 판결)

한편,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는 사망한 피해아동 외에 돌보아야 할 다른 자녀가 있다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양형요소 분석에서도, 다음의 <사례 5>와 같이 임신 또는 다른 가족(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감경사유로 언급된 사례가 1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식사를 거의 못하고 몹시 야윈 아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여 빚어진 사안이다. 당시 피고인들이 매우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상 징후를 보이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죽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 ...(중략)... 피고인들이 남은 아들이나마 충실히 양육하여 지난 과오를 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례 5〉, 수원지법 2007고단5733 판결)

반면, 다음 〈사례 6〉은 정역 20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서 위 사건과는 반대로 가해자의 두 자녀들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이 된 사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식으로 입양한 양모이므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략)...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두 자녀들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하였다.” (〈사례 6〉, 울산지법 2014고합356 판결)

김지혜 외(2013)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적절한 양육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사망한 아동 이외에 가족 내 다른 자녀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다른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양형에 있어서 사망아동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없었는지 또한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에 친권상실청구를 의무화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피해아동 이외에 돌보아야 할 다른 자녀가 있다는 것을 감형사유로 고려하는 관행은 또 다른 자녀를 학대의 위험에 재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판결에서도 〈사례 7〉과 같이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및 법원의 양형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친권자, 양육자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했던 양형 관행을 개선하는데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가 판사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이나 양형기준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아동학대 가해자, 특히 부모와 같은 보호자의 가학적 행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대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행위는 종래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아동에게 고유한 ‘독자적 권리’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현행 아동보호법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중략)... 같은 학대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특히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행위는 성인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범정이 보다 더 중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형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본질과 현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한다면 그간 온정적이었던 법원의 양형관행도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사례 7>, 서울고법 2013노3788 판결)”

### (3) 유족과의 합의

합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양형요소 중 하나이다. 이세원(2015a)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고 실행의 비율이 낮은 대신 집행유예의 비율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의 유족은 가해자와도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정 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죽은 피해아동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사례 8>의 경우 친부가 0세 자녀를 사망하게 하여 학대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아버지로서 어린 생명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유로 언급하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사례 8>, 서울서부지법 2014고합199 판결).

보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아동의 유족 또한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피해아동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숨겨진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세원(2015a)의 연구에서도 피해아동의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한 점과 그 가족이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 9>, <사례 10>의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C와 피고인의 시어머니 등 시집 식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살핌과 관심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방치 내지 방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비난받아 마땅한 입장에 있다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여럿 있다.”(<사례 9>, 부산고등법원 2014노249 판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양육의 책임을 부담하였어야 할 친모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가 피고인의 죄 값을 얼마나 덜어 줄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례 10>, 서울동부지법 2003고합396 판결)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강요받거나 가해자의 요청

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칙적으로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형관·김현숙, 2015). 이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앞으로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훈육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대나 방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가해자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가 설사 피해아동의 훈육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동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외부의 목격자 없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목격자라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사망한 피해아동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 것인지가 보다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11〉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오던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다.

“피해자 000이 2003. 10월경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이를 고쳐줄 의도로 체벌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중략) …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사례 11〉, 서울고등법원 2004노214 판결)

피고인이 훈육 목적의 체벌을 주장하더라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사례 12〉은 친부가 아들이 글씨 연습을 잘 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온 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과연 아버지가 친아들을 때린 것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사례 12〉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합7 판결)”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형해주었다(〈사례 12〉 광주고법 2008노69 판결). 이는 동일한 양형요소에 대한 판단이라도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음 <사례 13>과 같이 최근의 일부 판결문에서는 훈육 목적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감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혈육인 자녀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왔고, 급기야 … (중략) …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보호자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오해한 나머지, 아직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참담한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실제 가해진 물리력이 약하고 자신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양육방식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잣대 또한 눈을 감고 있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사례 13>, 전주지법 2014고합117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훈육 목적의 체벌에 있어서 관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팽배하게 남아 있으나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울산계모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훈육 목적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울산지법 2013고합309 판결).” 박양호(2015)의 연구에서도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과 가정 내 폭력에 관대한 기존 정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이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는 점을 감형사유로 쉽사리 받아들이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3) 방조자에 대한 양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주가해행위자뿐만 아니라 방조자 12명에 대한 판결문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적극적, 소극적으로 주가해행위자의 아동학대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해아동과 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방조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5명), 친모(2명), 계모(2명), 양부(1명), 동거남(1명), 지인(1명)으로, 대부분의 피고인이 아동과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부모 내지 동거인이었다. 특히 피해아동의 친부모인 경우가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는바, 이들은 사망아동에 대한 친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주가해행위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묵인하였거나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방조자는 대부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되고 있었으며, 12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3명(25%)에 불과하며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 1명은 무죄를 선고받

는데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1건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정사유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방조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로 매우 어리며, 주가해행위자의 학대가 수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해행위자의 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방조자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일부 피고인들은 주가해행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직접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벼이 묻은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다만 최근의 판결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방조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울산계모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중형을 선고되었다.

“사망 당시 불과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000도 아니고, 피고인과 이혼 후 4년 가까이 피해아동과 만난 바 없는 피해아동의 친어머니도 아닌, 오로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었다. ... (중략) ... 위와 같이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심각하고 잔인한 폭력행사와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이 너무나 큰 점 ... (중략) ... 등 그 정상이 너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례 14〉, 울산지법 2014고단1454 판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방조자에게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최근의 판결 동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결이 보다 확산된다면 양육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보다 강화되어 가정 내 다른 성인이 학대의 방조자나 조력자가 아닌 피학대아동의 보호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방조 사건요약<sup>1)</sup>

피고인	판결	관계	죄명	주요 범죄사실	선고형	피해자 연령	반복성	학대 기간
1	수원지원 2004고합188, 서울고법 2004노2696	친부	상해치사방조 등	동거녀의 학대행위 방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세	○	1년 반
2	수원지법 2010고합523, 서울고법 2011노692	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계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봉 등으로 폭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세	○	2달
3	인천지법 2012고합1449	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계모의 학대행위 방치	무죄	10세	○	3년
4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합50	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수년간 음식 제공, 치료 및 교육 소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2세	○	9년
5	울산지법 2014고단1454	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계모의 학대행위 방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거부, 치료 소홀	징역 3년	5세	○	1년 반
6	광주지법 2007고합101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동거남의 학대행위 방치, 치료 소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세	○	6개월
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고합456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아동을 때려 전신에 피멍이 들도록 학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2세	○	1개월
8	서울동부지법 2003고합396	계모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아동을 때려 수차례 상해를 가함,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방치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세	○	1달
9	전주지법 2014고합117	계모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베란다에 방치하여 정서적 학대	벌금 2백만원	4세	○	6개월
10	대구지법 영덕지원 2014고합30, 대구고법 2015노212	양부	아동복지법 위반	양자인 피해아동의 실종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함	벌금 7백만원	5세	X	-
1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고합112, 대구고법 2013노531	동거남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어린 피해아동을 장시간 홀로 집에 방치하여 방임	징역 10월	2세	○	1달
12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2고합19, 광주고법 2012노218	지인	살인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 친모가 딸들을 살해하도록 방조	징역 12년	10세, 6세	○	1년 반

##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의 양형 실태를 분석하여 가해자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지를 위한 양형에 있어서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 95건을 분석자료로 하여, 추가해행위자 69명 및 방조자 12명의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

11) 항소심 판결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된 죄명 및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터베이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료수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양형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판결문에서 관행적으로 등장하는 양형요소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로 나타났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하한이탈한 판결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형 하한과 범죄사실에 드러난 학대의 잔인성, 피학대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결과를 고려할 때, 그동안 비속살해인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실제로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09~2010년 양형기준 적용 이후 선고된 판결 중, 존속살해의 평균 선고형량이 9.77년, 살인죄의 평균 선고형량이 8.83년으로 나타나고 있고(대검찰청, 2013), 2013년 선고된 전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중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9.8%,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6.1%라는 점을 감안할 때(대법원 양형위원회, 2014),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 양형요소에 따른 실행비율 및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감경요소 중에서는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 ‘가중요소 중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필요성’ 등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 일관성 있는 양형을 저해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 편향적인 양형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셋째,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의 양형요소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문에서 관행적으로 감경사유로 작용하였으나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유를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일부 판결문에서는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명시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특례법의 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인식 변화,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민감성에 따라 동일한 양형요소라도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일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 양형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조자는 대부분 아동과 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부모 내지 동거인으로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6세 이하의 유아로서 학대에 매우 취약하고, 학대가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주가해행위자의 학대를 묵인한 소극적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에게 직접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양형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드러났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기존의 관대한 양형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찰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분화된 양형기준의 확보 및 준수가 요청된다. 특히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의 반복성 및 학대기간, 사망 아동 외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분화되고 차등적인 양형기준을 세우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에 따라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세부기준의 설정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아동학대 피해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거나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 내지 양형기준을 차등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또한 현행 아동학대 양형기준은 범위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로 전체 아동폭력범죄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단순아동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우거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전체 아동폭력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우자는 의견(박형관·김현숙, 2015)도 제시되고 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초기 수사 및 기소, 판결, 그리고 향후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 재학대방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충래 외, 20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허남순, 2003; 최경일·임종호, 2010), 아동학대교육 참여의사가 높을수록(노충래 외, 2012)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판사 등 법집행담당자들의 아동학대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특성에 대한 이해와 피해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 등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집행자들도 법 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의무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결문은 판사의 인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집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망사태에 대한 통계 및 가해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요원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법기관 및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조하여 최초 신고단계에서부터 학대행위자의 최종 양형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 및 사법처리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전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의 아동사망검토자문단(Child Death Overview Panel, CDOP)이나 미국의 아동사망조사(Child Death Review, CDR)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복지사,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발생하는 모든 아동사망 사건을 검토하여 아동의 사망사유를 명확히 규명하고 아동학대 사망여부를 심의, 판정하여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sup>12)</sup>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12) 영국의 LSCB의 관리 하에 있는 CDOPs는 사회복지, 경찰과 검시관 및 소아과 의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CDOPs는 모든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는 곳으로 아동사망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아동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아동학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세원·이정은·정익중·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6: 25-56.
- 김지혜·정익중·이희연·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31-154.
- 노명선·강동우, 2010, “실무운영을 통해서 본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11(3): 339-378.
-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 2012,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 『사회과학 연구논총』, 27: 77-106.
- 뉴시스, 2016, “⑥딸 학대 방임 친부 징역 4년...사법부도 아몰랑?”, 2016년 1월 29일.
- 대검찰청, 2013, 『양형백서: 판결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대검찰청.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4, 『2013년 연간보고서』, 서울: 양형위원회.
- 동아일보, 2014, “아동학대 사망 ‘쇠방망이’ vs ‘습방망이’”, 2014년 4월 8일.
- 로이슈, 2015,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2015년 9월 13일.
- 문화일보, 2016, “원영군 친부도 ‘살인죄’ 검토”, 2016년 3월 14일.
- 박미랑, 2013,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읽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2: 105-142.
- 박양호, 2015, “특별기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대한 소고-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64(2): 5-56.
- 박형관·김현숙, 2015,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 연구』, 대검찰청 연구보고서.
-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손지선·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7.
- 연합뉴스, 2014, “아동학대 사망사건 해외에선 ‘살인죄’ 인정”, 2014년 4월 11일.
- 오정수·정익중, 2013,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경은, 2015,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83-202.

(<http://www.makingthelink.net/child-death-overview-panels>, 2016.5.17. 인출).

미국의 아동사망조사(Child Death Review, CDR)는 의사, 변호사, 아동보호서비스 담당자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동사망 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간 아동사망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 모든 주에서 CDR이 조직되어 아동사망에 대한 학제간 조사를 수행하여 왜 아동이 사망하였는지를 밝히고,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https://www.childdeathreview.org/>, 2016. 5. 17. 인출).

- 이세원, 2015a,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113-136.
- \_\_\_\_\_, 2015b,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254-286.
- 이혜숙, 2013,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23-145.
- 최경일·임중호, 2010,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55-74.
- 최형표, 2015,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저스티스』, 146(3): 11-6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남순,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2): 209-230.
- 헤럴드경제, 2016, “부모 죽이면 ‘패륜’, 자식 죽이면 ‘훈육?’ ... 가족살인에 대한 엇갈린 시선”, 2016년 1월 21일.
- Anderson, T., Rourke, L., Garrison, D R., and Archer, W., 2001, “Assessing teaching persence in a computer conference context”,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5(2): 1-17.
- Bennett, M. D., Hall, J., Frazier, L., Patel, N., Barker, L., and Shaw, K., 2006, “Homicide of children aged 0 - 4 years, 2003 - 04: results from the 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Injury Prevention*, 12(suppl 2): ii39-ii43.
- Bourget, D., and Gagné, P., 2002, “Maternal filicide in Quebec”,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30(3): 345-351.
- Cavanagh, K., Dobash, R. E., and Dobash, R. P., 2007, “The murder of children by fathers in the context of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31(7): 731-746.
- Douglas, E. M., and Mohn, B. L., 2014, “Fatal and non-fatal child maltreatment in the US: An analysis of child, caregiver, and service utilization with the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et”, *Child Abuse & Neglect*, 38(1): 42-51.
- Friedman, S. H., Hrouda, D. R., Holden, C. E., Noffsinger, S. G., and Resnick, P. J., 2005, “Filicide-suicide: common factors in parents who kill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33(4): 496-504.
- Klevens, J., and Leeb, R. T., 2010,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in children under 5: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Death Reporting System”, *Child Abuse & Neglect*, 34(4): 262-266.
- McManus, M. A., Long, M. L., Alison, L., and L Almond.,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contact child sexual abuse in a sample of indecent image offender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forum for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21(3): 368-384.
- Megargee, E. L., 1982, “Psychological determinants and correlates of criminal violence”, *Criminal Violence*, 81-170,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 Nordlund, J., and Temrin, H., 2007, “Do characteristics of parental child homicide in sweden fit evolutionary predictions?”, *Ethology*, 113(11): 1029-1037.
- Overpeck, M. D., Brenner, R. A., Trumble, A. C., Trifiletti, L. B., and Berendes, H. W., 1998, “Risk factors for infant homicide in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9(17):

1211-1216.

- Putkonen, H., Amon, S., Eronen, M., Klier, C. M., Almiron, M. P., Cederwall, J. Y., and Weizmann-Henelius, G., 2010, "Child murder and gender differences - A nationwide register-based study of filicide offenders in two European countrie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1(5): 637-648.
- Riffe, D., Lacy, S., and Fico, F., 2014, *Analyzing Media Messages: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3rd ed)*, Routledge: NY.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 "Child Maltreatment 2014", <http://www.acf.hhs.gov/programs/cb/research-data-technology/statistics-research/child-maltreatment>.

##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for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Chung, Ick Joong**

(Ewha Womans University)

**Choi, Sun Young**

(Ewha Womans University)

**Jeong, Su Jeong**

(Ewha Womans University)

**Park, Na Rae**

(Ewha Womans University)

**Kim, Yu Ri**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f victimizers presented in sentencing(81 plaintiffs, 95 sentencing) for 55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between 2001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about 40% of main victimizers were imposed relatively minor punishment such as probation or imprisonment for less than 3 years. Judgments that deviated from lower limit comprised large proportion in connection with compliance with standards for statutory punishment and punishment determination. The elements of punishment determination, such as earnest rearing of child, psychological pain arising from death of child, sense of guilt, motivation that can be considered,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itigation of punishment although such elements could be judged differently, depending on perception or subjective tendency of judges towards child abuse. Even abettors in a position to prevent death of child were imposed minor punishment mostly by probation or monetary penalty.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re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punishment determination which has been conventionally mentioned in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such as first offender, accidental crim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fosters, agreement with family of the deceased, etc.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reinforce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to revamp standards for determining punishment unique to the cases of child abuse in the future.

Key words: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CMFs), sentencing, punishment determination

[논문 접수일 : 16. 04. 20, 심사일 : 16. 05. 03, 게재 확정일 : 16. 05. 19]